

심 사 보 고

1997. 3. 18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7년 2월 21일

○ 회부일자 : 1997년 2월 22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(1997. 3.17) 상정
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교육청 관리국장 신재철)

가. 제안 이유

- 국내여비규정 개정 ('96.12.31) 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 골자

- 여비의 종류중
 - 현지교통비를 일비로,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함

3. 검토보고 (교육사회 전문위원 김영만)

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,
본 개정조례(안)은

- '96.12.31일 개정된 (대통령령인)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 의결 (참석 6명, 찬성 6명)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개정조례(안)
- 신구조문 대비표